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민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2338 발 의 년 월 일:2025년 01월 31일 발 의 자:이민석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영철,

김재진, 김태수, 남궁역, 남창진, 박 석, 옥재은, 유정인, 윤종복, 이봉준, 이종태, 이종환, 이희원, 채수지, 최민규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○ 「공동주택관리법」 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해 감사 요청을 하기 위한 입주자 동의비율이 30%에서 20%로 완화됨에 따라, 조례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입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감사 요청에 필요한 입주자 동의 비율을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함(안 제9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 중 "3"을 "2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9조(감사의 요청) ① 입주자등 | 제9조(감사의 요청) ① |
| 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 | |
| 원, 관리주체, 법 제64조제1항에 | |
|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| |
|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| |
|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| |
|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전 | |
| 체 입주자등의 10분의 <u>3</u> 이상의 | <u>2</u> |
|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감사를 | |
| 요청할 수 있다. |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○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공동주택관리법」 개정에 따라 현행과 같은 조례 제9조(감사의 요청)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, 관리주체,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전체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완화 (30%-)20%)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진형

2 02-2180-7954

e-mail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